

안심하고 상담하세요!

110



국민권익위원회
Korea Commission on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120-705 서울특별시 서래동구 통일로 67
TEL : (02)360-6993~8 / FAX : (02)360-1351

분야별 공익침해행위 사례

건강 분야

AIDS에 감염된 혈액유통

- 혈액관리기관의 잘못된 헌혈관리 및 혈액관리로 에이즈(AIDS)에 오염된 혈액을 유통시킨 행위 (혈액관리법 위반)

관련 법률

의료법 등 45개



환경 분야

폐기를 불법 매립

- 공장에서 배출된 매립이 금지된 화학물질이 함유된 폐기를 수천 톤을 농지에 불법매립한 행위 (폐기물관리법 위반)

관련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등 50개



안전 분야

폭발위험 냉매가스 판매

- 폭발위험이 있는 기차 자동차 에어컨 냉매가스를 무허가로 수입하여 자동차 공업사에 납품하는 행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

관련 법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56개



소비자 이익 분야

가짜 참기름 유통

- 중국산 참기름과 식용유를 혼합해 만든 참기름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유통한 행위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관련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24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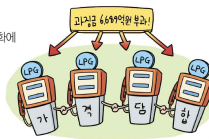
공정 경쟁 분야

LPG 담합

- 정유회사가 6년간 LPG 가격을 담합한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5개



당신의 양심에 안심을 더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Korea Commission on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당신의 양심에 안심을 더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국민 생활 안정과 깨끗한 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 ('11. 9. 30. 시행)

「공익침해행위」는 어떤 것인가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180개 법률의 발치 또는 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신고는 이곳에 하세요!

- 1) 공익침해행위 기업을 대표자 또는 사용자
- 2) 소관 행정·감독기관
- 3) 수사기관
- 4) 국민권익위원회
- 5) 국회의원
- 6) 공익신고 대상법률의 집행과 관련하여 법률에 의해 설치된 공공단체

공익신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신분비밀보장 →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공개·보도하는 행위 금지

보호 조치

신분보호 →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보호조치
신분상 불이익조치 금지 → 파면·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 발생 시 원상회복 등 조치

공익신고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최고 10억원까지 보상금 지급

공익신고로 치료·이사·갱송·임금 손실 등 피해 또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구조금 지급

공익신고자의 책임을 덜어드립니다!

- 공익신고로 인하여 자신의 범죄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이나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
- 신고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면도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처벌됩니다!

제재 유형	위반 유형
징계 처벌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보도 불이익 조치를 한 자
벌칙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공익신고자와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보도 신고내용을 공개한 조사기관 종사자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공익신고자와 협조자에게 신분상 불이익조치를 한 자 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자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공익신고자를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보호는 이렇게 해요!

수산물 수입업체 대표 B는 수입 금지된 시료를 대우 대리 등 수산물을 식품 대우인 것처럼 허위신고하여 국내에 수입한 후 전국 백화점, 대형마트 및 음식점 등에 10년 간 판매하여 수십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하였다.

업체 직원 A는 우연히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상급자 C에게 상의하였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였다.

A의 신고로 인하여 조사가 시작되자 B는 공익신고자로 추정되는 A에게 신고를 취소하라고 협박하였으나, A가 이를 거부하자 해고하였다.

Tip B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추징금 20억 5,0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A의 신고 내용은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할까요?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인 식품위생법 제 94조 「벌칙」에 해당



A는 어디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수입업체 대표B, 관할 시·군·구청, 식품의약품 안전청,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A는 보상금이나 구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결로 추징금 20억 5,000만원이 확정되었으므로 2억 2,900만원까지의 보상금과 신고료 치료비·이사비·임금손실 등 피해 또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구조금 지급 가능



해고당한 A는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공익신고를 이유로 해고되었고 인정될 경우 복직



A를 해고한 B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B가 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불이행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